

안양동 368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공고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에 따른 안양동 368 일원 조합설립(변경)인가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1일

안 양 시 장

1. 공고기간 : 2024.03.11. ~ 2024.03.29.

2. 조합설립(변경)인가 신청내용

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2) 명칭 : 안양동 368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
나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1) 위치 :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68번지 외 26필지
- 2) 면적 : 4,147㎡

다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- 1) 착수예정일 : 사업시행계획인가로부터 12개월 이내
- 2) 준공예정일 : 착수예정일로부터 24개월 이내

라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1) 조합명칭 : 안양동 368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- 2) 사무실 소재지 : 경기도 안양시 명학로 32-1 1층 101호

마. 변경 내용

- 정관 및 조합원 변경